



##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

### 판 결

사 건 2025고단2794 저작권법위반  
피 고 인 A  
검 사 김상순(기소), 이재영(공판)  
변 호 인 변호사 김재훈  
판 결 선 고 2026. 3. 4.

### 주 문

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.

### 이 유

#### 1. 공소사실

누구든지 저작재산권,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된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. 4. 16. 16:15경 시흥시 B, (주)C 사무실 내에서 IP주소 (IPV4 1 생략)에서 MAC주소 (MAC주소 1 생략)를 사용하여 고소인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'D'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용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.

#### 2. 판단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03-30

- 적용법조: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
- 친고죄: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
- 공소기각 판결: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(공소제기 후인 2025. 10. 21. 피해자의 고소 취소의 의사가 담긴 "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"가 제출됨)

판사 김현정 \_\_\_\_\_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03-30

## 범죄일람표

-범죄일람표-

연번	일시	IP 주소	MAC1	사용프로그램
1	2025. 4. 16. 16 15			
2	2025. 4. 17. 16 50	상동	상동	상동
3	2025. 4. 18. 10 48	상동	상동	상동
4	2025. 4. 18. 14 24	상동	상동	상동